장성군의회 공고 제2021-10호

장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예고

「장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혼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 및 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.

2021년 5월 3일

장 성 군 의 회 의



- 1. 조례명 : 장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
- 2. 제안이유
 - O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
- 3. 주요내용
 -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 - O 예산낭비 공개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4조)
 - O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 -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 - O 예산성과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4. 예고기간

O 예고기간 : 2021. 5. 3. ~ 10.(7일간)

O 예고장소 :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(공지사항)

5. 조례안 : 붙임

6. 의견 제출

-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(참조 의회사무과 장)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O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, 주소, 연락처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- O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
 - 받는 사람 : 장성군의회의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

장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성군의 예산절감 사례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장성군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낭비 재발을 방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군수의 책무) 장성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장성군민(이하 "군민"이라 한다)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- **제3조(공개대상)**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예산절감 사례
 - 2.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,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
 - 3.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
 - 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 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- **제4조(공개방법)**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.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할 경우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는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.
- 제5조(신고센터 설치 등) ① 군수는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 제안 및 예산낭비 신고 등(이하 "예산 낭비 신고 등"이라 한다)을 접수·처리하기 위하여 장성군 예산낭비신고센터 (이하 "신고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- ② 신고센터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「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 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- **제6조(위원회 운영)** ① 군수가 영 제5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성군 예산성과 금 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「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」제4조에 관한 사항

- 2.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제안
- 3. 예산절감, 예산낭비,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
- 4. 군수가 예산낭비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.
- **제7조(예산성과금 지급 등)** ① 군수는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① 제1항에 따른 성과금 및 포상금의 지급은 「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」 및 「장성군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